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그 밖에 직제개편(2016.3.1.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안 제2조 7항 신설)
- 나. 제2조제6항 ‘그 밖에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제2조제8항으로 변경
(안 제2조 8항으로 변경)

다. 위원회 간사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을 “교육경비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변경(안 제8조 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02805,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성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을 주민편의를 위해 1시간 무료, 1일 10,000원 등 내용추가와 월정기권의 최소화 등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 나. 주차장 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 변경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변경(안 제6조)
- 다.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 대물 등의 사고나 차량 도난 등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어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 라. 손해배상 조항 신설로 인한 일부 조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02805,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성북구민의날” 기념식과 문화행사에 관하여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단서 조항을 붙여 5월 7일만 개최하던 기념식과 문화행사를 변경·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조)
- 나. 구민 체육대회 항목 추가 등 행사 및 세부운영 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3조 1항, 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6,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 한 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마. 한부모가족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 확보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02805, 전화: 2241-5876, FAX: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6-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의 시설 이용대상 및 감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놀이체험장의 영유아 및 보호자 사용료를 보문점과 형평에 맞게 사용료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
(안 제27조제2항 [별표2])
- 나.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부모지원센터(보문)의 놀이체험장(행복자람터) 영유아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설이용 주민의 만족도 증대
(안 제27조제2항 [별표2])
-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보문)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
(안 제27조제2항 [별표3])

라.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기준액 신설(안 제27조제2항 [별표2])

마.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오기 부분 삭제 및 정정

(안 제20조 [별표1], 안 제27조제2항 [별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 (종암동), 우편번호 : 02805, 전화 : 2241-5876, FAX : 2241-66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